

### 유상감자 한도

**Q** 현재 미국이 본사를 두고 있고, 100%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

1. 자본금은 140억
  2. 자본잉여금(주발초) 422억
  3. 자본조정(감자차손) 421억
  4. 기타포괄손익(지분법자본변동) 206억
  5. 이익잉여금(미처분이익잉여금) 4930억
- 질의사항)

1. 유상감자를 할 경우 최대 얼마까지 유상감자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?(유상감자 한도)

**A** 이익잉여금의 90%정도를 이익배당성격의 유상감자 가능할듯함-더 민감내용은 증권사와 담당변호사  
자문하세요

### 식비 비과세

**Q** 2023년부터 급여 비과세 항목중 식비의 한도가 2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,  
당사에서는 식사를 무상제공하고 있어 기존에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.  
무상제공되는 식비가 식비 비과세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만큼 비과세 적용이 가  
능한지 문의 드립니다.

**A** 현재 식사 및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월10만원 이하 식사대가 비과세로 인정되며, 20  
만원 증액은 아직 확정 공포된 상태는 아닙니다.  
따라서 귀사의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### 외화 채권회수

**Q**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매출거래가 발생하였으나, 중국의 관계회사에서 당사에 채권에 대해  
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.

그래서, 중국의 관계회사를 대신하여 대만에 있는 관계회사에서 당사의 채권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하려고 합니다.

사실관계

1. 당사와 중국의 관계회사 간의 매출 거래 발생, 당사에서 약 \$2,000,000의 매출채권 발생
2. 중국의 관계회사(A)에서 당사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.
3. 중국의 관계회사(A)와 대만의 관계회사(B)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/채무에 대해서, 관계회사 B가 관계회사 A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기로 함.
4. 그래서, 대만관계회사 B가 당사에 \$700,000을 지급하고자 함.

질의사항)

1. 당사가 중국 관계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일정부분 채권 금액을 대만의 관계회사에서 받는 경우, 특별한 세무 issue가 있는지요...?
2. 세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

**A** 귀사가 매출거래처가 아닌 매출거래처의 관계사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,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서류 등을 구비하면 되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 아닙니다.

## 업무용승용차 관련 문의

**Q** 업무용승용차 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

당사에서 장기렌트로 중형 승용차와 금융리스로 대형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

1. 장기렌트(3년)중인 중형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임차료의 70%가 아닌지요?
2. 금융리스(5년)중인 대형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역시 임차료의 70%가 아닌지요?

**A**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에서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,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며,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70%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.